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7. 5 선고 2017가단101320 판결 [점유회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디에스캠

변론 종결 2017. 5. 31.

판결 선고 2017. 7. 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이 법원 B, C(병합)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5. 8. 17. 및 2015. 11. 17.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. 나. 원고는 2015. 8. 26.경 주식회사 엠에스케미칼에 대한 400,000,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.

다.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. 9. 5.경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. 10. 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
라. 피고는 2016. 10. 6.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2. 30. 원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'원고(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서의 피신청인)는 피고(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의 신청인)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'는 내용의 인도명령결정을 하였다(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).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라47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,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, 그 후 원고가 즉시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인도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7호증,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케미칼에 대한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, 이에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위법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.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인도명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. 또한 부동산인도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인도명령과 달리 원고가 유치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가 유치권자임이

인정되더라도 이미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점유 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.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를 빼앗겼으므로,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판단

(1)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204조 제1항).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·증명하면 족하고,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·증명할 필요가 없다(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13177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상대방의 위법한 자력의 행사 등에 의하여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의미하고,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의 행사로서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(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1683 판결 등 참조). 또한 타인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,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나(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참조),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점유회수의 소로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

(2)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의 침탈, 즉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당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,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에 원고가 당시 적법한 유치권자였다는 등의 그 주장하는 사유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

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표극창

별지목록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 공장용지 5924.8㎡
2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 1동
위 지상
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36㎡
3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 3동
위 지상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506㎡
4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 4동
위 지상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6㎡. 끝.

